

## 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(재지정)신청서

\*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| 30일(지 정 )<br>20일(재지정) |
| 신청인  | 기관명 | 전화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대표자 | 생년월일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주 소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「항로표지법」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(제4항)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·용품등의 검사대행 기관으로 지정(재지정)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 | 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<br>3. 검사원 명단 | 수수료 |
| 해양수산부장관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<br>2.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                | 없음  |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해양수산부장관 확인 사항 중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동의인(검사원)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